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http://www.daedeok.go.kr>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제2024-63호
2024. 10. 11.(금)

차 례

고 시(1)

-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 고시(고시 제2024-108호) 1

공 고(6)

-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4-1016호) 2
-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4-1017호) 5
-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4-1018호) 8
-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4-1025호) 11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4-1028호) 14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4-1029호) 15

공 략									
-----	--	--	--	--	--	--	--	--	--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건물번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부여 고시일
신탄진동 802	한절구지로 76 (신탄진동)	건물신축	행정지명[한절구지]를 반영	2024. 10. 11.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토지정책과(☎ 042-608-5306)로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누리집) (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관련근거
 - 가. 과태료 부과: 「폐기물관리법」 제8조, 같은 법 제68조
 - 나.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기 간: 2024. 10. 11. ~ 31. (20일간)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공시송달 내용
 -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대덕구 자원순환과(☎042-608-6834)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사전통지서의 경우, 2024. 10. 31.까지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과

태료 부과금액이 부과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내 과태료 자진 납부 시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아울러 위 기간이 도래하면 사전통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문 의 처: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순환과(☎042-608-6834)

[별첨1]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내역

성 명	주 소	위반내용	부과금액(원)	송달 불가 사유
신*식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북로72번길 **, **동 **호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담배꽂초 투기)	50,000	폐문부재
천*기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청남로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담배꽂초 투기)	50,000	폐문부재

끝.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관련근거
 - 가. 과태료 부과: 「폐기물관리법」 제8조, 같은 법 제68조
 - 나.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기 간: 2024. 10. 11. ~ 10. 31. (20일간)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공시송달 내용
 -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대덕구 자원순환과(☎042-608-6834)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부과 고지서의 경우,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의 가산금이 부과 및 이후 매월 1.2%의 증가산금(최

대 60개월)이 부과되며, 납기 내 미납 시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덕구 자원순환과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순환과(☎042-608-6834)

[별첨1]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내역

성 명	주 소	위반내용	부과금액(원)	송달불가 사유
정*영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203번길 **, **동 **호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담배꽂초 불법투기)	50,000	폐문부재
류*완	세종특별자치시 도움1로 **, **동 **호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담배꽂초 불법투기)	50,000	폐문부재

끝.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관련근거
 - 가. 과태료 부과: 「폐기물관리법」 제8조, 같은 법 제68조
 - 나.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기 간: 2024. 10. 11. ~ 10. 31. (20일간)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공시송달 내용
 -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대덕구 자원순환과(☎042-608-6834)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독촉고지서의 경우,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의 가산금이 부과 및 이후 매월 1.2%의 증가산금(최

대 60개월)이 부과되며, 납기 내 미납 시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문 의 처: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순환과(☎042-608-6834).

[별첨1]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성 명	주 소	위반내용	부과금액(원)	송달불가사유
(주)스마트렌트카	광주광역시 서구 금부로99번길 **, ***호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담배꽂초 불법투기)	50,000	폐문부재
박*옥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1754번길 **, **동 **호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담배꽂초 투기)	50,000	폐문부재

끝.

공 시 송 달 공 고

24년도 이행강제금 재부과건과 관련 위반건축물 소유자(점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시정요구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제 목 : 위반건축물 시정요구 (2024년도 이행강제금 재부과 대상)
2. 공고기간 : 2024. 10. 11. ~ 2024. 11. 25.(14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송달대상 : 붙임 참조
5. 송달내용

24년도 이행강제금 재부과 대상 건축물 중 시정조치를 위하여 위반건축물 시정요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서류가 전달되지 않아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대덕구청 건축과(☎042-608-5143)로 연락 바랍니다.

아울러, 공시기간이 지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

연번	대상자	위법행위 현황				위반내용	비고
	성명	위치	용도	구조	면적(m ²)		
1	이○원	중리동 165-24	창고	조립식판넬조	28.35	「건축법」 제14조 무단증축	폐문부재
2	김○자	신탄진동 143-31	일반음식점	철파이프구조	4.68 2.97	「건축법」 제14조 무단증축	폐문부재
3	이○봉	비래동 558-33	창고	시멘트블럭조	6.48	「건축법」 제14조 무단증축	폐문부재
4	김○란	비래동 137-35	주택	조립식패널구조 경량철골구조 조립식패널구조	6.60 1.91 6.88	「건축법」 제14조 무단증축	폐문부재
5	박○택	비래동 151-14	창고	컨테이너	9 11.1	「건축법」 제14조 무단증축	폐문부재
6	정○남	오정동 441-9	주택	FRP구조 조립식판넬구조	8.26 22	「건축법」 제14조 무단증축	폐문부재
7	최○주	비래동 137-36	주택	FRP구조	5.45 6.90	「건축법」 제14조 무단증축	폐문부재
8	이○주	중리동 500-11	주택	조립식판넬구조	10.8	「건축법」 제14조 무단증축	폐문부재
9	이○미	비래동 141-1	창고	경량철골구조	8.25	「건축법」 제14조 무단증축	폐문부재
10	유○준	읍내동 343-12	일반음식점	철파이프구조	32.5	「건축법」 제14조 무단증축	폐문부재
11	김○엽	비래동 140-1	창고	컨테이너	6.25	「건축법」 제14조 무단증축	폐문부재
12	박○진 이○모	신탄진동 143-31	일반음식점	철파이프구조	10.5 5.6	「건축법」 제14조 무단증축	폐문부재
13	이○욱	중리동 411-27	창고	조립식판넬구조	3.30	「건축법」 제14조 무단증축	폐문부재
14	김○남	중리동 254-30	주택	경량철골구조	9.95	「건축법」 제14조 무단증축	폐문부재
15	윤○로	중리동 133-3	소매점	조립식판넬구조	32	「건축법」 제14조 무단증축	폐문부재
16	박○미	중리동 132-3	창고	조립식패널구조	49.56	「건축법」 제14조 무단증축	폐문부재
17	송○자	연축동 200-4	창고	조립식패널구조	9.00	「건축법」 제14조 무단증축	폐문부재

18	김○례	비래동 1-14	종교시설	철파이프구조	128.5	「건축법」 제14 조 무단증축	폐문부재
19	백○순	덕암동 8-18	창고	조립식패널구조	22.60	「건축법」 제14 조 무단증축	폐문부재
20	강○자	비래동 산33-11	종교시설 창고	철파이프구조 조립식패널구조	153.00 47.50	「건축법」 제14 조 무단증축	폐문부재
21	최○영	중리동 119-6	소매점	조립식패널구조	8.51	「건축법」 제14 조 무단증축	폐문부재
22	계○순	중리동 366-18	음식점	철파이프구조	20.00	「건축법」 제14 조 무단증축	폐문부재
23	김○숙	중리동 165-21	주택 음식점	조립식패널구조 조립식패널구조	13.30 21.16	「건축법」 제14 조 무단증축	폐문부재
24	양○근	중리동 374-21	주택	조립식패널구조	8.4	「건축법」 제14 조 무단증축	폐문부재
25	박○매	오정동 226-24	주택	조립식패널구조	13.30	「건축법」 제14 조 무단증축	폐문부재
26	이○화	송촌동 291-24	창고	조립식패널구조 조립식패널구조	28.80 6.00	「건축법」 제14 조 무단증축	폐문부재

끝.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의견제출 안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제 목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10. 11. ~ 2024. 10. 31.(20일간)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4. 공시송달내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사전통지 하오니 공고 기간 내에 대덕구청 환경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거나 대덕구청 환경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공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따라 공고 기간 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차량 및 '24.9.30.까지 저공해조치 완료한 차량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과태료 부과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과(☎ 042-608-6864). 끝.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 관련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제 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관련근거
가. 과태료 부과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같은 법 제16조
나. 공시송달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기 간 : 2024. 10. 11. ~ 10. 31. (20일간)
4. 공고대상 : 별첨
5. 공시송달 내용
가.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관련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대덕구 환경과(☎042-608-6866)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전통지서의 경우, 2024. 10. 31.까지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과태료 부과금액이 부과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내 과태료 자진 납부 시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아울러 위 기간이 도래하면 사전통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문 의 처 :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과(☎042-608-6866)

[별첨1]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성명	차량번호	주소	위반내용	부과금액(원)	반송사유
김*수	56두04**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서로 10, ***호(노은동)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제2제7항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0,000	기타
임*빈	365루33**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 160, ***동 ***호(법동, 삼익소월아파트)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제2제7항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0,000	기타
한*원	33주85**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로205번길 77-8, ***호(용운동)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제2제7항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0,000	기타
CUI *****GUO	227마67**	경기도 시흥시 정왕천로428번길 15-1, ***호(정왕동)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제2제9항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0,000	기타
박*현	67다27**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 342-14, *동 ***호(용문동, 세종아트빌)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제2제7항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0,000	폐문부재
윤*업	11부46**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남로 55-1, ***호(송촌동)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제2제7항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0,000	기타
김*덕	349구13**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579, ***동 ****호(홍도동, 홍도아파트)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제2제7항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0,000	폐문부재
문*형	42러47**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218번길 20, ***동 ****호(와동, 대덕브라운스톤)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제2제9항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0,000	기타
케이** 주식회사	156구39**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30, *층(도룡동, *열 ***호, 대덕첨단산업유통)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제2제7항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0,000	기타
송*희	67가70**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성로 21, ***동 ****호(용산동, 호반써밋그랜드파크 *BL)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제2제9항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0,000	기타
이*관	254부42**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죽로 25,***동 ****호(송강동, 송강그린아파트)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제2제7항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0,000	기타
박*해	48수08**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산로 135, ***동 ***호(송촌동, 선비마을아파트)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제2제7항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0,000	기타
SHEN *****JIE	22모07**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길 **, (독산동)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제2제7항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0,000	기타

성명	차량번호	주소	위반내용	부과금액(원)	반송사유
하*기	160마25**	대전광역시 동구 성남로28번길 48-16, *동 ***호(성남동, 공신맨션)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제2제7항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0,000	폐문부재
박*현	67다27**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 342-14, *동 ***호(용문동, 세종아트빌)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제2제7항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0,000	폐문부재
구*우	90너78**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555, ***동 ***호(석봉동, 금강역슬루 타워)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제2제7항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0,000	폐문부재
박*연	192도64**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1로 15, ***동 ***호(소담동, 새샘마을* 단지)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제2제7항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0,000	폐문부재
박*기	232어22**	대전광역시 서구 구봉로 419, ***동 ***호(정림동, 강변들금성백조 아파트)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제2제7항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0,000	폐문부재
강*환	31모9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 139, ***동 ***호(죽전동, 용인죽전동 부센트레빌)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제2제7항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0,000	폐문부재
김*현	58다86**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218번길 20, ***동 ****호(와동, 대덕브 라운스톤)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제2제9항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0,000	기타
김*섭	46우86**	대전광역시 대덕구 벚꽃길 71, **동 ***호(평촌동, 케이티앤지본사 사택)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제2제7항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0,000	기타
김*선	20머25**	대전광역시 동구 송촌남로11번길 67, ***호(용전동, 덕산하이츠)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제2제9항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0,000	폐문부재
권*한	83저79**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9, ***동 ***호(법동, 주공아파 트)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제2제7항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0,000	기타
임*술	39어23**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521번길 91, ***호(중리동)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제2제7항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0,000	기타
김*식	62우09**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9, ***동 ***호(법동, 주공아파 트)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제2제7항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0,000	기타
정*식	01도84**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 151, ***동 ***호(법동, 그린타운아파 트)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제2제7항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0,000	기타

성 명	차량번호	주 소	위반내용	부과금액(원)	반송사유
주식회사 집합 *****	106거49**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남로 91, ***호(망월동, 르보아파크2)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제2제7항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0,000	폐문부재
이*윤	230어89**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1로 12-22, *동 ***호(관평동, DTVan 오 피스텔)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제2제7항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0,000	기타

끝.